

은평구 공고 제2026-12호

건축허가 제한(신규) 공고

은평구 신사동 30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(선정)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,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, 「건축법」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8일

은평구청장

1. 건축허가 제한 신규(안)

가. 제한목적 :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(선정)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

나. 제한근거 : 「건축법」 제18조 제2항 및 제4항

다. 제한기간 : 2025. 12. 26.(최초, 市 고시일) 부터 2년

※ 단,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

라. 제한구역 : '25년 제6차(12월)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상정구역

연번	자치구	구역명 (가칭)	위치	제한면적(㎡)	선정여부	비고 (이력)
1	금천구	-	독산동 979 일대	93,990	선정	-
2	금천구	-	독산동 1022 일대	83,203	선정	-
3	강북구	-	수유동 310-15 일대	15,944	선정	-
4	은평구	-	신사동 300 일대	30,222	선정	-
5	마포구	-	신수동 250 일대	44,718	선정	-

마. 제한대상

선정구역

1) 제한대상

가)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

나)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

다)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(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)

- 라)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 마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2) 제한제외 대상

- 가)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(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)
 나)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
 다) 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
 라) 「재난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

단,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

※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: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,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

2. 지형도면 : 기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공고 및 고시문 참고

-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734호(25.12.26.)

· 고시문 위치 : 서울시보(<https://event.seoul.go.kr/seoulsibo/list.do>)

○ 은평구 신사동 300번지 일대

